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운영 개선 지적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배차 지연 민원 지속 발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민주당, 의정부4)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북부본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교통복지팀과 만나 도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도는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시군 간 광역이동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차량 대수의 부족 등으로 인한 배차 지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오고 있어 올해 상반기부터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특별교



오석규 도의원은 27일 도의회 북부본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교통복지팀과 만나 도내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통수단 이용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의 장기간 대기 발생해 옴에 따라 바우처택시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오 의원은 "바우처택시의 활성화는 특별교통수단 배차 지연 완화 등 교통

약자의 이용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휠체어가 필요치 않은 교통약자들께서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바우처택시의 운영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제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제도 시행 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민창 기자

의회 의회 단신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제도 도입 시급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

최종현(민주당, 수원7)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 한국장기요양기관지 역협회연합 나윤재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은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

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조례 제정을 논의하게 됐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시설이 그 중심에 서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돌봄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의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소자 삶의 질 향상과 처우와 인권이 잘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인증제는 행정적이고 획일화된 성과지표만을 따른 평가가 돼서는 안되며 경기도형의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이를 통해 복지현장의 요양시설 운영체제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평균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돌봄인증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형 돌봄인증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인증 평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고려돼야 한다. 또한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창 기자

미국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인천시의회 찾아

앵커리지 직항노선 개설 우호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인천시의회 이봉락 의장은 28일 한국 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네트워크 사업부의 초청 사업에 참석하고자 방한한 엘리 그레이잭스 의원을 만나 인천-앵커리지 직항 노선 개설과 우호 협력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인 엘리 그레이잭스 의원은 알래스카주 초·중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계 역사를 교육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한국계를 비롯한 알래스카주 소수 인종 집단의 권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는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시의회와 지난 1993년 우호 교류 협

정을 체결하고 30년 넘게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엘리 그레이잭스 의원은 "인천-앵커리지 직항노선 개설과 양 도시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 및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장은 "알래스카주에 거주하고 있는 70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의 숙원인 인천-앵커리지 직항노선이 하루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교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앵커리지 직항노선은 지난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운항하다 중단됐다.

현재는 시애틀 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14시간이 소요되며 직항노선이 개설되면 8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김동현 기자



인천 부평동초등학교 3학년 학생 170명과 28일 부평구의회를 견학했다. (사진=인천 부평구의회)

지역 청소년들 지방자치 이해 돕는다

인천 부평동초, 부평구의회 견학

인천 부평동초등학교 3학년 학생 170명이 27일과 28일 부평구의회를 견학했다.

구의회는 지역 청소년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견학에는 홍순옥 의장, 이익성 부의장이 함께했으며 학생들은 구의회 4층 본회의장을 견학하면서 구의회의 기능과 구의원의 역할 등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학생들은 또 본회의장 의원석에 앉아 각종 시설물과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해 듣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영상을 시청하며 지역의 법안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배웠다.

구의회 홍 의장은 "구의회에 방문한 부평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오늘 견학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수원서 AV페스티벌 즉시 중단해야"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건전한 교육환경 지켜야"

황대호(민주당, 수원3·사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한 성인 엑스포 행사의 개최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인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행사 주최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 부위원장은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비열한 시선은 여성 인권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인권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수원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편에서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수월시를 비롯한 수원교육지원청·수원서부경찰서 등 관계 당국은 지역공동체를 쪼먹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 행사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창 기자

양평 대평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

1.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산112번지 일원 양평 T.P.C골프장 조성을 위한 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양평군 고시 제 2024-76호(2024. 03. 14.)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반영하여 구역내 용도지역, 지구, 구역 면적 등의 면적을 변경하고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평군청 도시건설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양 평 군 수

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조서: "다음과 같음"
나.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도면: "계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다. 공람기간: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라. 공람장소: 양평군청 도시건설국 도시과
마. 의견제출
- 장소: 양평군청 도시건설국 도시과 공람장소
- 문의: 양평군청 도시건설국 도시과(☎ 031-770-2356)
바. 유의사항
- 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기정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1,900,516	-	1,900,516	100.0	
소	1,900,516	갑250,663	1,649,853	100.0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900,516	갑250,663	1,649,853	84.8
	생선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	-	-	-
	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	중250,663	250,663	13.2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양평 지평 대평 산112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250,663	80% 이하	구역계 변경(계획)으로 인한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26	대평	특정개발진흥지구	양평 지평 대평 산112번지 일원	-	1,900,516	양고 제1995-5호(1995.12.14.)	
변경	26	대평	특정개발진흥지구	양평 지평 대평 산112번지 일원	-	1,649,853	양고 제1995-5호(1995.12.14.)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6	대평	용도지구 면적 변경 1,901,420㎡→1,649,853㎡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일부 원형보존녹지를 구역계에서 제척하고자 하여 제척되는 원형보존녹지는 존치하러함.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6	대평	특정형	양평 지평 대평 산112번지 일원	1,900,516	갑 250,663	1,649,853	양고 제1995-5호(1995.12.14.)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6	대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1,901,420㎡→1,649,853㎡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일부 원형보존녹지를 구역계에서 제척하고자 하여 제척되는 원형보존녹지는 존치하러함.

4. 지구단위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변경 후(B)		총 갑(B-A)	비고	
			면적(㎡)	구성비(%)			
계	1,900,516	100.0	1,649,853	100.0	갑250,663		
체육시설	482,359	25.4	482,359	29.2	-		
건축시설	27,246	1.4	27,246	1.7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111,149	5.8	111,149	6.7	-		
녹지시설	계	1,279,762	67.4	1,029,099	62.4	갑250,663	
	조성녹지	436,073	22.9	436,073	26.4	-	
	원형녹지	843,689	44.5	593,026	36.0	갑250,663	

도면번호	위치	구분	내 용			비 고
			기 정	계 변경	변 경 후	
1	양평 지평 대평 산112번지	건폐율(%)	0.514	-	0.514	
		용적률(%)	0.69	-	0.69	
		높 이	최고 19.75m	-	최고 19.75m	
		배 치	-	-	도면합동	

2.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및 관계도서: 계재 생략